

◎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353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09일

고용노동부장관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, 교통사고조사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 추가(안 제83조의5제19호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
- 전자우편 : egu3155@korea.kr
- 팩스 : 044-202-809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 「정보공개-예산·법령정보-입법·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(044-202-88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